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제286회 1차 정례회

검 토 보 고 서

2026. 9. 9.(수)

순서	검 토 안 건	제 안
1	서울특별시 마포구 마포아트센터 설치·관리 및 사용료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남해석 의원 외 7인

행정경제위원회

(전문위원 유준상)

“서울특별시 마포구 마포아트센터 설치·관리 및 사용료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보고자 : 전문위원 유준상)

1. 제출자 및 제출경과

○ 제출자 : 남해석 의원 외 7인

○ 제안일 : 2026. 8. 21.

○ 회부일 : 2026. 8. 24. (의안번호 : 26-78)

2. 제안이유

○ 마포아트센터 문화·체육프로그램 이용객의 접근성 향상 및 타 시설과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마포구민의 여가선용과 건강, 복지증진을 달성하고자 하는 것임.

3. 주요내용

○ 마포아트센터 문화·체육프로그램 이용 차량 주차요금 정비 (별표)

4. 참고사항

○ 관계법령: 「문화예술진흥법」,「서울특별시 마포구 마포아트센터 설치·관리 및 사용료징수 조례안」

○ 입법예고: 2026. 8. 24. ~ 8. 28.

5. 검토보고

1 조례의 개정 취지

○ 본 일부개정 조례안은 남해석 의원외 7명 의원이 공동발의 하여 행정경제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으로 마포아트센터 문화·체육 프로그램 이용객의 무료 주차 시간을 확대하여 편의성 및 접근성을 향상하고자 하는 것임.

2 주요 개정 내용

○ 마포아트센터 문화·체육프로그램 이용 차량 주차요금 정비 (별표)

3 개정내용 검토

○ 프로그램 이용 차량 주차요금 무료 시간 확대

현 행		개 정 안	
문화·체육프로그램 차량	- 프로그램 이용시간 초과 40분 무료 - 강좌시간이 정해지지 않은 경우 1시간 30분 무료 - 추가 10분당 500원	문화·체육프로그램 차량	- 프로그램 이용시간 초과 1시간 무료 - 강좌시간이 정해지지 않은 경우 2시간 무료 - 추가 10분당 500원

○ 마포구 내 마포구민체육센터와 마포주민편익시설은 이용시간 기준 최대 3시간까지 무료 또는 감면을 적용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됨.

- 다만, 마포아트센터는 주차면수가 145면으로 협소하여 무료 주차 시간을 과도하게 확대할 경우 차량 회전율 저하 및 만차로 인한 후속 시간대 이용자의 주차 불편이 발생할 수 있

음.

○ 기대효과로 프로그램 이용객의 이용 편의 및 접근성 향상

○ 유사 공공 체육시설과의 형평성 제고

- 마포구민체육센터, 마포주민편익시설 등 마포구 내 유사시설과 서대문구, 은평구, 영등포구 등 인근 자치구 유사시설의 무료주차 기준을 고려할 때, 마포아트센터 기준은 상대적으로 제한적인 측면이 있음. 따라서 본 개정안은 유사시설과의 형평성을 일정 부분 보완하면서도 마포아트센터의 주차 여건을 함께 고려한 방안으로 볼 수 있음.

○ 마포구 및 인접 자치구 주차요금표

구분	시설	일반 주차요금	프로그램·회원 차량 기준
마포구	마포아트센터	일반차량 기본 30분 1,000원, 추가 10분당 500원	프로그램 이용시간 초과 40분 무료, 강좌시간이 정해지지 않은 경우 1시간 30분 무료, 추가 10분당 500원
마포구	마포구민체육센터	최초 30분 무료, 이후 5분당 200원	등록회원은 이용시간 기준 최대 3시간 적용, 이후 5분당 200원
마포구	마포주민편익시설	세부 일반요금은 별도 확인 필요	주민편익시설 이용고객은 3시간 이내 주차요금 감면 가능
서대문구	서대문문화체육회관	최초 30분 무료, 이후 5분당 500원, 최대 20,000원	강좌 수강 시 수강시간 + 1시간 무료
서대문구	북아현문화체육센터	5분당 250원, 최초 10분 무료	강좌시간 + 1시간 무료
은평구	은평통일로스포츠센터	별도 세부요금 확인 필요	회원에 한해 2시간 주차 무료
영등포구	영등포 제1스포츠센터	세부 일반요금 별도 확인 필요	프로그램 이용회원 2시간 무료

6. 종합 검토의견

○ 본 일부개정안은 마포아트센터 문화·체육프로그램 이용자의 실제 이용행태를 반영하여 무료주차 시간을 조정하려는 것으로, 유사시설 조사 결과, 강좌·프로그램 이용회원에게 2시간 내외의 무료주차를 제공하고 있어 현행 기준을 일부 완화 하고 타 시설과의 형평성 면에서 타당하며, 이용 편의 및 접근성 향상 측면에서 개정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사료됨.

○ 다만, 마포아트센터는 주차면수가 145면으로 제한되어 있어 무료주차 시간을 과도하게 확대할 경우 차량 회전율 저하로 인한 후속 시간대 이용자의 주차 불편함이 없도록 시행 이후 주차장 혼잡도와 민원 발생 추이를 지속적으로 점검하여 향후 운영상 보완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관 계 법 령】

문화예술진흥법

[시행 2025. 11. 11.] [법률 제21091호, 2025. 11. 11., 일부개정]

제3조(시책과 권장) ①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문화예술 진흥에 관한 시책(施策)을 강구하고, 국민의 문화예술 활동을 권장·보호·육성하며, 이에 필요한 재원을 적극 마련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문화예술 진흥시책은 국민생활의 질적 향상을 위한 건전한 생활 문화의 개발·보급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③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시책을 수립하려면 미리 문화예술 기관 및 단체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④제1항에 따른 문화예술 진흥에 관한 시책과 계획의 시행에 관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요청하면 관련 기관 및 단체는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